



의령군



수신 관내 제조업체 대표자
(경유)

제목 노사협의회(노동조합) 설치 및 신고 의무 안내 등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될 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규정과 함께 설립신고서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2항에 의거 전년도 12월31일 기준 설립통보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행정청(의령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
4. 아울러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 아니하거나, 규정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며, **정기현황 통보서 미제출 및 노동조합 변경 미 신고시(변경 시 30일 이내)**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관서의 통지없이도 의무제출 사항임**

※ 포털사이트 '법제처' 검색 해당법조명 검색(시행규칙 별지 서식 참조). 끝.

의령군수

주무관

허행남

기업지원팀장

장지호

경제기업과장

전결 2024. 4. 23.

정만호

협조자

시행 경제기업과-23756

접수

우 52140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경제문화국 경제기업과 / <http://www.uiryeong.go.kr>

전화번호 055-570-3112

팩스번호 055-570-3109

/ namibang@korea.kr

/ 대한민국 공개